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19. . . (제 회)	

관광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박양우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연월일	2019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개정('19.8.20. 개정, '20.2.21. 시행)으로 폐교재산이 야영장 용도로 활용 가능해짐에 따라 폐교재산을 야영장업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체 부지면적 및 건축물 면적에 관한 제한사항을 완화하여 현행 제도의 적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아울러 가족호텔업 등급결정이 의무화됨에 따라('19.11.19.) 등급결정 미신청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폐교 활용 야영장에 한하여 ‘야영장 내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미만’ 적용 제외(시행령 별표1 제4호다목

(1)(아) 단서조항 신설)

1) 야영장업 등록 시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미만이도록 하던 것을 폐교 활용 야영장에 한하여 적용 제외

2) 시도교육청 보유 폐교 1,409개소 중 554개소(39.3%)의 폐교 내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전체면적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따라 야영장 등록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

나. 보전관리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의 폐교를 활용하여 야영장을 등록할 경우 전체면적 및 건축물 면적 제한 적용 제외(시행령 별표1 제4호다목(1)(자) 단서조항 신설)

- 1) 보전관리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에서 야영장업 등록 시 전체면적은 1만 제곱미터 미만, 건축물 면적은 300제곱미터 미만이도록 하던 것을 폐교를 추가적인 진입도로 및 건축물 신설 없이 야영장업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제외
- 2) 보전관리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에 위치한 폐교 83개소 중 29개소(34.9%)가 1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 보유, 62개소(74.7%)의 건축물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따라 야영장 등록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

다. 등급결정 미신청 가족호텔업에 대한 과징금을 2성급 이하 관광호텔 및 소형호텔업에 준하여 200만원으로 규정(시행령 별표3 개정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환경부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(예정)

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4호다목(1)(아) 중 “것”을 “것.”로 하고, 같은 (아)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「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‘폐교재산’을 야영장업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

별표 1 제4호다목(1)(자)1)부터 5)까지 외의 부분 중 “것”을 “것.”로 하고, 같은 (자) 각 세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「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‘폐교재산’을 추가적인 진입도로 및 건축물 신설 없이 야영장업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1), 2)를 적용하지 아니한다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(제34조제1항 관련)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해당 법조문	업종별 과징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
		여행업			관광숙박업											관광객 이용시설업						국제 회의업			유원시설업		
					호텔업										휴양 콘도 미니 엄업	전문 휴양 업	종합 휴양 업	야영 장업	관광 유람 선업	관광 공연 장업	외국 인관 광 도 시민 박업	국제 회의 시설 업	국제 회의 기획 업		카지 노업	종합 유원 시설 업	일반 유원 시설 업
		관광호텔업			수상 관광 호텔 업	가족 호텔 업	한국 전통 호텔 업	호스 텔업	소형 호텔 업	의료 관광 호텔 업																	
일반 여행 업	국외 여행 업	국내 여행 업	5성급 · 4성 급	3성급							2성급 이하																
1. 법 제4조(등록) 위반 가. 등록기준에 적합하 지 아니하게 된 경우 나. 관광사업의 변경 등 록 기간을 위반한 경 우 다.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2. 법 제5조(허가와 신 고) 위반 가. 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 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 를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나.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 니하거나 변경신고 를 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4조 <																										

[illegible]

[illegible]

[illegible]

[illegible]

[illegible]

17. 법 제38조(관광종 사원의 자격 등)제1 항 단서를 위반하여 해당 자격이 없는 자 를 종사하게 한 경우	법 제38조	800	400																								
18. 법 제78조(보고· 검사) 위반	법 제78조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. 사업에 관한 보고 또 는 서류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 우		800	400	400	1200	800	400	400	400	400	400	400	400	800	400	800	200	200	200	40	1200	800	500	800	400	80	
나. 관계 공무원이 장부 · 서류나 그 밖의 물 건을 검사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		800	400	400	1200	800	400	400	400	400	400	400	400	800	400	800	200	200	200	40	1200	800	300	800	400	80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[별표1]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다. 야영장업 (1) 공통기준 (가)~(사) (생략) (아)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 (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. 이하 이 목에서 같다)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<u><단서 신설></u> (자)(아)에도 불구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	[별표1]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다. 야영장업 (1) 공통기준 (가)~(사) (현재와 같음) (아)----- ----- ----- ----- -----것. <u>단, 「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‘폐교 재산’을 야영장업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</u> (자)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 것
<단서 신설>

- 1)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
미터 미만일 것
 - 2)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
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
미터 미만이고, 야영장 전체
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
- 3~5) (생략)

[별표3]

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
 (제34조제1항 관련)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해 당 법 조 문	업종별 과징금액							
		관광숙박업							
		호텔업							
		관광호텔업			수 상 관 광 호 텔 업	한 국 전 통 호 텔 업	호 스 텔 업	소 형 호 텔 업	의 료 관 광 호 텔 업
		5 성 급 · 4 성 급	3 성 급	2 성 급 이 하					

-----것.
 단, 「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
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‘폐교
 재산’을 추가적인 진입도로
 및 건축물 신설 없이 야영장
 업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1),
 2)를 적용하지 아니한다

- 1)~5) (현행과 같음)

[별표3]

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
 (제34조제1항 관련)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해 당 법 조 문	업종별 과징금액							
		관광숙박업							
		호텔업							
		관광호텔업			수 상 관 광 호 텔 업	한 국 전 통 호 텔 업	호 스 텔 업	소 형 호 텔 업	의 료 관 광 호 텔 업
		5 성 급 · 4 성 급	3 성 급	2 성 급 이 하					

7. 법 제1 9조제1 항 단서 를 위반 하여 등 급결정 을 신청 하지 아 니한 경 우	법 제1 9조									
		400	300	200	200	<신 설>	200		200	200

7. 법 제1 9조제1 항 단서 를 위반 하여 등 급결정 을 신청 하지 아 니한 경 우	법 제1 9조									
		400	300	200	200	<u>200</u>	200		200	200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2866